

CEO
Report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2011. 2

김 동 겸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 분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목 차

요약	1
I. 검토배경	3
II. G20 서울정상회의 개요	4
III. 금융규제 개혁안 합의내용	6
1. 은행의 새로운 자본 및 유동성 규제(바젤Ⅲ)	6
2. 시스템 상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11
IV. 금융규제 개혁에 따른 보험산업 시사점	12
1. 금융권역별 특성	12
2. 보험업에 대한 시사점	17
V. 결론	22
참고문헌	23

요약

-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은 은행자본 규제 강화, 유동성 규제 도입, 시스템 상 중요 금융기관(SIFI)에 대한 규제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함.
 - 개별 금융기관의 도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기준을 강화함.
 - 특정 금융기관의 위험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요소를 제한하기 위해 SIFI 규제를 도입함.

- 은행산업에 대한 규제체계 변화는 향후 보험산업의 규제 개편 논의를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권내의 대응 방안마련이 요구됨.
 -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금융규제 개혁 사항은 주로 은행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나, 향후 유사한 규제가 보험업에 대해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험업에 대한 금융규제 개혁 방안을 준비 중임.

- 보험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 도입 시, 보험산업의 리스크 특성을 반영한 규제 및 감독체계 수립이 요구됨.

- 첫째, 보험산업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BaselⅢ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본구성의 강화를 수용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경우 현행 보험회사에 대해 자산과 부채에 상응하는 위험자본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는 자본규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셋째, 보험산업의 경우 시스템 리스크 초래나 확대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시스템 리스크 유발이 가능한 업무 영역의 경우 SIFI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I 검토배경

- 2010년 11월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개최된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서울 선언문에 합의함.
-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혁, 글로벌 금융안정망,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 무역, 비즈니스 서밋, 개발 의제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 합의가 이루어짐.
- 이번 회의는 세계 경제가 ‘위기를 넘어 동반 성장(Shared Growth beyond Crisis)’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된 합의는 주로 은행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보험산업에도 향후 이와 유사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금융규제 개혁안의 주된 내용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제안한 새로운 은행 자본 및 유동성 규제와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제안한 시스템 상 중요 금융기관(SIFI) 규제 및 감독 강화, 장외파생상품 개혁 등임.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BCBS와 FSB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험업에 대한 금융규제 개혁 방안을 준비 중에 있음.
- 본 보고서는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주요 금융규제 개혁안을 검토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II G20 서울정상회의 개요

■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계기로 G20 재무장관 회의가 G20 정상회의로 격상되었고, 동 정상회의는 2009년 8월 피츠버그 회의 이후 정례화 되어 최상급 포럼으로 발전

- 선진국과 세계경제에서 비중이 커진 신흥개도국과의 금융 협의 강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G8*에 11개 신흥국**과 EU가 포함되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출범

* 1974년 오일쇼크 이후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5개국으로 구성된 G5 경제협의체는 1975년에 이탈리아, 1976년에 캐나다, 그리고 1997년에 러시아가 가입하여 G8 체제로 확대

** 11개국은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터키,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임.

-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긴밀한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G20 재무장관회의를 G20 정상회의로 격상

■ 서울 G20 정상회의는 선진국이 아닌 국가에서 개최된 최초의 사례이며, 성공적인 개최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됨.

- G20 정상회의는 2008년부터 워싱턴, 런던, 피츠버그, 토론토 등 선진국에서만 열렸음.

- 특히 개도국 지원 및 글로벌 금융안정망 구축과 같은 ‘Korea Initiative’에서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등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가교 및 의제 설정자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

■ 한편, 서울 G20 정상회의의 의제는 기존의제와 신규의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의제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둠.

○ 기존의제는 지난 4차례의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안들에 대한 이행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전체 의제의 60~70%를 차지

- G20 Framework : 세계경제의 중기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공조 방안 논의로서, G20의 정책공조 방안 및 각국의 정책약속을 종합한 ‘서울액션플랜’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둠.
- 국제금융기구 개혁 : 선진국 위주로 되어 있는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지배구조를 개혁하여 정통성을 제고하자는 논의로서, IMF의 국가 간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을 달성
- 금융규제 개혁 : 금융위기 재발 방지 및 금융규제의 국제적 일관성 확보를 위한 개선 논의로서, 은행의 자기자본 규제 강화 및 유동성 규제 도입, 거시건전성 규제, 신흥국의 규제개혁 과제 등에 합의

○ 신규의제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성장을 이룩하는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의제로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경제개발 등이 이에 해당

- 개발 : 금융위기 이후 G20의 정통성 제고를 위해 비회원국의 주요 관심사인 개발 의제에 대한 논의로서, 개도국의 빈곤 해소와 개발격차 해소의 원인과 방향을 제시하는 등 ‘서울개발컨센서스’를 도출
- 글로벌 금융안전망 : 외부충격으로 인한 급격한 자본유출입 변동성 대응 및 위기전염 방지를 위한 논의로서, IMF의 대출제도 개선에 합의
- 비즈니스 서밋 : G20 정상회의 준비과정에 민간부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서밋 정례화에 합의

Ⅲ 금융규제 개혁안 합의내용

1. 은행의 새로운 자본 및 유동성 규제(바젤Ⅲ)

가. 자본 구성 강화

- 은행이 보유할 최소자본비율을 현행기준(바젤Ⅱ)보다 크게 강화하였으며, 시기별·국가별·은행별로 규제비율을 차등화
- 요구자본(총자본)비율(BIS 비율)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8%가 그 대로 유지되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통주 자본과 기본자본(Tier1)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비율을 높이기로 함.
- － 보통주 자본비율은 현행 2%에서 4.5%로 규제 수준을 강화하며, Tier1 자본을 현행 4%에서 6%로 상향 조정

〈그림 1〉 자본규제비율 변화

	BaselⅡ	BaselⅢ				
		최소요구 자본	자본보전 Buffer	경기대응 Buffer	SIFI 추가자본	손실부담 채권
보통주 자본비율	2%	4.5%	2.5%	0~2.5%	?	?
기본자본 비율	4%	6%	2.5%	0~2.5%	?	?
총자본비율	8%	8%	2.5%	0~2.5%	?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0.10.14), 바젤위원회 금융규제 개편 현황

- 위기 시 손실보전 등에 필요한 자본적립의무가 신설되었는데, 은행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위험가중자산의 2.5%에 해당하는 고정완충자본(보통주자본)을 매기마다 적립해야 함.

○ 과도한 신용팽창 시 0~2.5%의 경기대응 완충자본(보통주 자본 또는 기타형태의 자본)을 감독당국이 요구할 수 있음.

－ 신용팽창 여부는 시점별 GDP 대비 신용 비율을 산출하여 장기 평균선과의 차이, 주관적 평가를 감안하여 국가별로 결정

○ SIFI나 손실분담(Bail-in)채권¹⁾에 대한 추가 자본부과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임.

■ BIS 비율이 높으나 손실을 흡수하지 못하여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실흡수력이 높은 자본인 보통주 자본을 종전보다 엄격히 정의하여 자본의 질 강화

○ 손실흡수력이 큰 보통주 자본을 이전보다 엄격하게 정의하고 자본조정항목을 보통주 자본에서 차감

－ 위기 발생 시 실질적 자본가치가 없는 영업권 및 기타 무형자산, 이연법인세, 비연결 금융사 투자지분, 자기주식 등의 경우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음.

－ 무형자산 중 모기지서비스권리, 이연법인세 중 회계기준 차이에 따라 발생한 이연법인세 등은 보통주 자본의 15% 한도 내에서 자본으로 인정하며, Tier1 및 Tier2 자본의 적격요건을 강화하고 있음.

■ 자본비율 증가에 따라 대출이 축소되어 GDP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 감소에 따른 편익을 고려해 볼 때 적지 않은 양(+)의 순편익 기대됨.

1) 손실분담(bail-in)채권은 구제금융(bail-out)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채권보유자에게 금융회사 부실로 인한 손실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임. 정리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법적 bail-in은 보호대상이 되는 예금을 제외한 모든 채무에 손실부담이 가능한 반면, 계약상 bail-in은 선순위 채무에만 손실부담이 가능함.

- FSB와 BCBS의 거시경제영향 평가 보고서, BCBS의 장기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자본비율이 1%p 상승할 경우 GDP는 0.19%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위기발생확률 감소로 인한 편익은 GDP의 약 1.4%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나. 리스크 포괄범위 확대

- 손실규모에 비해 자본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파생상품, 유동화증권 등에 대해 위기상황을 반영하여 자본을 계산하고 리스크 관리기준을 강화
 - 규제자본체계 강화조치를 통해 구조가 복잡한 증권화 상품에 대한 자본요구량 확대
 - － 자산유동화 증권을 기초로 발행한 유동화 증권(CDOs of ABS) 등 재유동화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두 배로 상향 조정하고, 부외거래수단에 대한 자본요구량 확대
 - 트레이딩 계정의 경우 위기 발생에 따른 가격변동성을 반영하기 위해 Stressed VaR를 추가로 부과
 -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축소를 위해 장외파생상품 및 RP 등 증권금융거래에 대한 자본요구량 확대

다. 레버리지비율 도입

-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기존 바젤Ⅱ 자기자본비율과 달리, 신용등급에 무관하게 명목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자본을 보유하도록 의무화

- 최저 레버리지 비율은 명목 금액 대비 Tier1 자본을 3%이상 유지하도록 설정

$$\text{레버리지비율} = \frac{\text{Tier1 자본}}{\text{명목 익스포저}} \geq 3\%$$

- 부외항목도 명목금액을 익스포저로 포함하며, 파생상품은 상계를 허용하되 주식사항인 거래원금에 대해 미래평가손익 추정치 분을 익스포저로 반영
- 2017년 말 까지 레버리지비율 도입에 따른 부작용 여부를 점검한 후 2018년부터 규제로 이행할 예정임.

라. 유동성비율 도입

-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잠재적 유동성 충격에 대한 은행의 복원력 강화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더불어 만기불일치 해소를 위해 국제 최저 유동성 기준을 도입
- 국가별로 상이한 기준의 유동성 규제를 도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규제차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기준의 단기(LCR) 및 중장기(NSFR) 유동성 규제 도입
 - 유동성 규제는 위기상황 발생 시 유동성 충격을 대비하기 위한 유동성충당비율(LCR : Liquidity Coverage Ratio)규제와 은행 자금조달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순안정자금비율(NSFR : Net Stable Funding Ratio) 규제를 주된 골자로 함.
 - 유동성충당비율(LCR) 규제는 위기발생 시 은행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30일 동안 자체적으로 순현금 유출을 충당할 수 있는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함.

$$LCR = \frac{\text{고유동성 자산}^*}{\text{순현금유출}^{**}} \geq 100\%$$

* 고유동성자산 : 위기상황에서도 매매처분에 별다른 제약 없이 현금화 할 수 있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양질의 자산

** 순현금유출 : 위기상황에서 30일 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의 이탈규모 및 자산의 현금유입규모의 차액

- 순안정자금비율 규제(NSFR)는 일반적 위기 상황에서 1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자산규모를 초과하여 안정적 자금을 유지하도록 의무화

$$NFSR = \frac{\text{안정자금 인정금액}^*}{\text{안정자금 필요금액}^{**}} > 100\%$$

* 안정자금 인정금액 : 자본 및 부채를 ASF(available stable funding) factor로 가중 평균한 금액의 합계액

** 안전자금 필요금액 : 자산을 RSF(required stable funding) factor로 가중 평균한 금액의 합계액

- BCBS는 금년 상반기에 실시한 유동성 규제 도입에 따른 계량영향 평가를 반영하여 유동성충당비율의 경우 2011년 관찰기간을 적용한 후 2015년 시행 예정

- 한편, 순안정자금비율의 경우 2012년부터 관찰기간 적용 후 2018년 시행 예정

2. 시스템 상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 특정 금융기관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 상 중요 금융기관(SIFI)에 대한 정책 체계, 작업절차 및 이행일정을 마련
 - 각국에서는 자국내 SIFI의 대마불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며, 국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의 경우 Global-SIFI로 별도 지정하여 보다 엄격한 규제 부과하기로 합의
- 시스템 상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금융을 통해 대마불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SIFI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 방안 검토
 - FSB, BCBS 등은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G-SIFI 권고를 적용할 금융기관을 2011년 중반까지 지정하고, 2012년 말 각국의 G-SIFI 정책에 대한 최초 상호평가 실시
 - 2011년 말까지 추가자본 부과, 조건부자본 활용, 채권자 규제제도 등 손실흡수력 강화 수단을 마련하고, 금융기관 규모 등에 따라 SIFI 간에도 차등적으로 자본 부과
- Global-SIFI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가자본을 부과하여 손실 흡수능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세계적인 대형 은행들에게 우선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의 은행들의 경우 세계적인 대형 은행에 비해 규모가 작아, G-SIFI에 해당하는 은행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Ⅳ 금융규제 개혁에 따른 보험산업 시사점

■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은 은행자본 규제의 강화, 유동성 규제 도입과 더불어 시스템 상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 개별 금융기관의 도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기준을 강화하였음.
- 특정 금융기관의 위험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요소를 제한하기 위해 SIFI 규제를 도입

■ 은행에 대한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강화 조치는 향후 보험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업권의 대응 마련이 요구됨.

- 금융권역별로 자금조달, 투자방식, 핵심사업 부문, 노출된 리스크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미시건전성 감독 규제에 있어서는 권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규제체계가 도입될 필요성 존재
- 한편, 금융시스템의 혼란 방지를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 도입에 있어서는 개별 금융기관의 타 금융시스템에 대한 리스크 전이를 고려한 규제체계 수립이 요구됨.

1. 금융권역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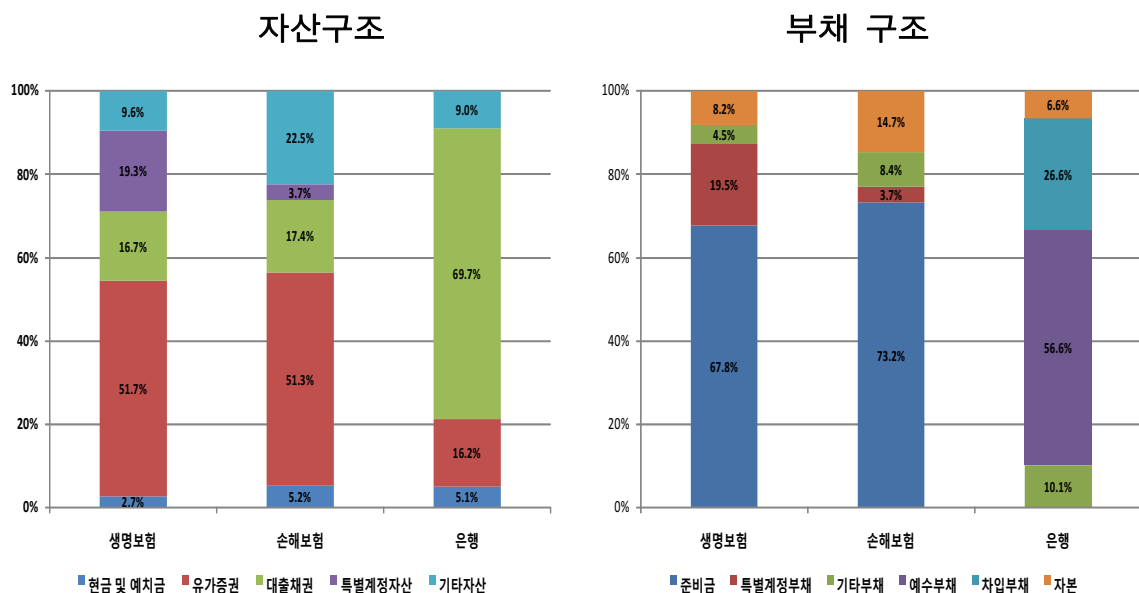
가. 자금조달 형태 및 투자방식

■ 보험사의 경우 대부분 보험계약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주주지분이나 후순위 부채의 규모는 작은 반면, 은행의 경우 보험사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구조가 다양

- 보험회사 부채의 경우 70% 가량이 미래에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은행 부채의 대부분은 예수부채 및 차입부채로 구성
- 은행의 자금조달 규모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양한 사업모형과 더불어, 특정 영업활동에 대해 특정한 자금 조달 방식이 이루어지도록 규제하고 있지 않는 환경을 반영함.
- 이에 따라 은행의 자금은 고객 및 타 금융기관의 예금, 기업어음, 채권, 커버드 본드, Repo 거래, 주주지분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됨.

〈그림 2〉 국내 금융업권별 자산 및 부채 구조



주 : 2010년 6월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보험회사 자산의 평균 듀레이션은 8~10년 정도인 반면, 은행에서 조달한 자금은 상대적으로 듀레이션이 짧은 특징을 보임.

－ 이에 따라 보험사의 대차대조표는 은행에 비해 변동성이 작은 특성을 보유

－ 또한, 단기자금인출의 규모가 작고, 속도 면에 있어서도 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까지의 기간이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특징을 보유

■ 보험회사의 리스크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나 투자 손실로 발생하며, 은행의 경우는 대출 손실이나 자산가치의 감소와 관련됨.

○ CEA(201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행의 경우 자산 가치가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나,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상대적으로 경기변동과 관련성이 낮은 특징을 보임.

○ 특히 보험회사의 경우 부채와의 매칭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인해 투자에 대한 손실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 국내보험회사의 자산 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 6월을 기준으로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비중이 50% 수준이며, 이 중 국공채에 대한 비중이 60%를 상회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나. 유동성 위험

■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각국은 잠재적인 유동성 충격에 대한 은행의 복원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보유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각국 은행들은 적절한 자본수준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공적자금 지원으로 이어짐.

○ 특히, 각국이 서로 다른 기준의 유동성규제를 도입할 경우 국가간 규제차익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유동성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준의 유동성 규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됨.

■ 은행의 경우 기본적으로 단기에금으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대출로 운용하기 때문에 유동성 리스크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나, 보험사의 경우 은행과 다른 사업구조 및 상품 특성으로 인해 유동성 리스크는 제한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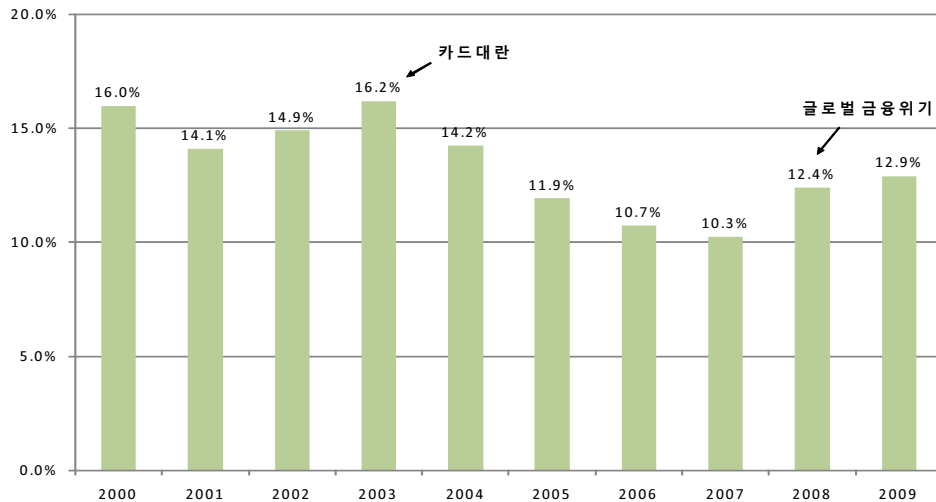
○ 보험회사는 부채를 장기로 조달하여 단기자산에 투자하는 사업모형을 보유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해약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유동성 리스크는 타 금융업권에 비해 낮은 실정²⁾

－ 2003년 카드대란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실효상실해약률이 다소 상승하였으나, 보험계약의 대규모 인출사태는 발생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음.

○ 자산측면에서 유동성 리스크는 이연신계약비, 재보험에 의한 회수가능 자산, 영업권 등 자산의 감액 또는 담보요구 등에 의해 주로 발생하나, 이들 자산 항목의 경우 가치변화가 급변하지 않는 특성을 보이게 됨.

2) 보험산업 내에서도 업권별 사업구조의 특성상 유동성 리스크로 인한 충격의 효과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간 차이를 보임. 즉, 손해보험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재산상의 손실과 같은 외생적 사고 발생에 대한 보장을 제공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해약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단기적인 보험계약 특성으로 인해 국채와 같은 유동성 자산에 대한 보유가 높은 상황이므로, 해약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은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그림 3〉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실효상실 해약률 추이



주 : 실효상실해약률=실효상실해약액/(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자료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통계

다. 시스템 리스크

■ 은행과 보험사에 있어서의 시스템 리스크의 차이는 금융안정위원회(FSB)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서 제시한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정의 및 평가 기준을 기초로 판단 가능

- FSB에서는 시스템 리스크를 금융시스템 또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금융서비스의 흐름에 방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으로 정의하고 있음.
- FSB는 시스템 상 중요 금융기관(SIFI)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규모, 대체가능성, 상호연계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IAIS의 경우 이러한 기준 외에 경제로의 전염 속도를 제안
 - 금융시스템의 개별 구성요소로 공급되는 금융서비스의 규모, 위기 발생 시 타 금융부문에 대한 동일 서비스 제공 가능 수준, 금융시스템의 타 구성요소와의 상호 연계 정도를 기준으로 SIFI를 구분

-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평가 기준 중 하나인 규모의 경우 보험산업에 대한 시스템 리스크 평가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음.
- 보험회사의 경우 규모가 증대될 경우 대수의 법칙에 의해 리스크 분산 효과가 가능하므로, 규모가 클수록 보험사에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줌.
- 보험회사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시스템 리스크의 영향을 받기 쉬우나, 금융시스템 또는 경제부문에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하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남.³⁾
- 보험회사의 경우 은행과는 역할이 상이하며, 오히려 시스템 리스크를 제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고, RBC 등 효과적인 보험감독 및 규제체계 등을 통해 보험산업의 시스템 리스크 확대 유발 가능성을 제어할 수 있음.

2. 보험업에 대한 시사점

- 은행의 BaselⅢ 규제 합의사항은 향후 보험산업의 규제 개편 논의를 촉발 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권내의 대응 방안마련이 요구됨.
-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금융규제 개혁 사항은 주로 은행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나 향후 유사한 규제가 보험업에 대해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또한 BCBS와 FSB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험업에 대한 금융규제 개혁 방안을 준비 중임.

3) IAIS(2010), position statement on key financial stability issues

- 은행에 대한 자본 강화, 레버리지 비율 도입 등 새로운 규제 체계가 보험산업에 직접 적용되기보다, 보험의 리스크 특성이 반영된 감독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

■ 보험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BaselⅢ에서 제시되고 있는 자본구성의 강화를 수용할 필요 존재⁴⁾

- 다만, BaselⅢ의 보통주 자본 위주의 강화보다는 SolvencyⅡ의 기본자본 위주의 강화가 보험산업에 보다 합리적인 방식인 것으로 판단됨.

- 2012년 시행 예정인 SolvencyⅡ의 경우 이미 높은 리스크를 보유한 사업영역에 대해 추가적인 자본을 요구하고 있어, BaselⅢ 도입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을 요구하는 경우 보험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존재⁵⁾

■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경우 보험산업에서 매출(보험료)과 부채(준비금)에 대해 일정한 자본을 요구하고 있는 자본규제와 중복되는 특징을 보임에 따라 동 규제 도입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됨.

- 은행은 수취업무 이외에도 은행 간 거래, 채권발행 등을 통해 자본조달이 이루어지는 반면, 보험회사는 대부분 보험영업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게 되어 레버리지비율 도입은 보험영업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4) 김해식(2010.11.29), 은행업의 BIS3와 보험업 건전성 규제, KIRI Weekly, 보험연구원

5) CEA(201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추가적인 요구자본이 발생할 경우 가격, 보험계약자, 투자자 측면에서 보험에 대한 관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요구자본의 추가적인 확대에 따른 실익 존재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11년 4월 적용 예정인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의 경우 보험료나 준비금 증가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위험자본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에 모두 자본규제가 적용되는 특징을 보임.

■ 시스템 리스크와 관련하여 보험산업은 일반적으로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하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되나, 시스템 리스크 유발가능성이 존재하는 업무 영역에 대해서는 SIFI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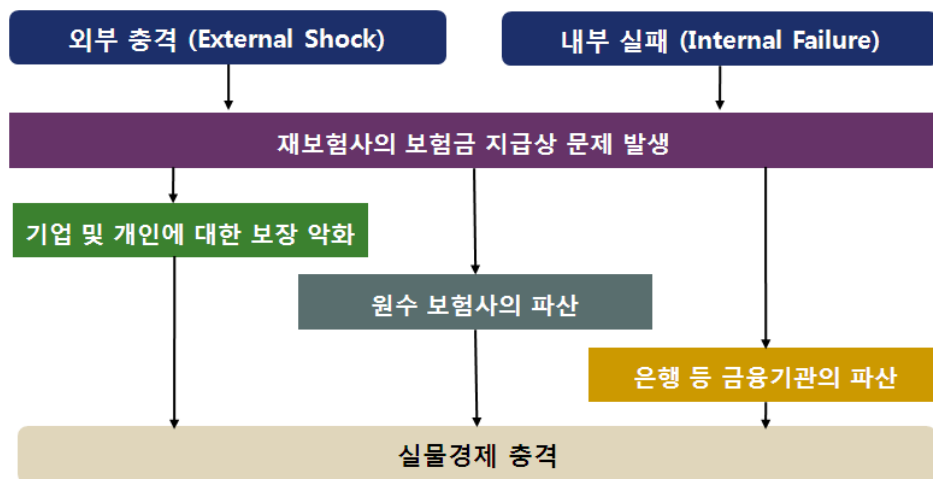
- 보증보험 같은 특정 업무영역의 경우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하거나 확대시킬 수 있으며, 보험그룹 내부 또는 부문 간 리스크 전이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존재
 - 보증보험회사의 업무 영역은 크게 보험영업, 구상, 투자로 구성되는데, 영업업무와 투자업무의 경우 일반손해보험회사의 성격과 유사하나, 보험금 지급 후 보험계약자나 보증인으로부터 대위변제한 금액을 회수하는 구상업무가 존재하여 유동성 리스크가 존재
- 재보험사의 경우 리스크 재분배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나, 파산시 원수보험사들의 보험인수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실물경제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
 - 그러나 재보험사의 핵심 업무인 자본관리, 재보험 제공, 재재보험(retrocession)이나 자본시장을 통한 위험전가 활동의 경우 계약 규모가 작아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제한적이며, 산업 내에서 이러한 영향을 쉽게 흡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음.⁶⁾

6) Swiss Re(2010), The essential guide to reinsurance; The Geneva Association Systemic Risk Working Group(2010), Systemic Risk in Insurance-An analysis of insurance and financial stability, The Geneva Association

- 또한, 규제차익 방지와 금융위기 시 타 그룹의 영업활동에서 기인한 파급확산 효과를 고려할 때, 향후 효과적인 복합금융 그룹 감독을 위해 다음 사항 들을 고려할 필요 존재

- 복합금융그룹의 개별 사업단위 부문의 투명성 제고
 - 복합금융그룹 내 보험과 은행부문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리리스크 등의 통합리스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수단이 요구됨.

〈그림 4〉 재보험사 시스템 리스크의 실물경제 전이 경로



자료 : Swiss Re(2003), Reinsurance - a systemic risk?

- 다양한 지역과 규제체계 하에서 복합금융그룹의 특정 부문을 규제할 수 있는 요건의 명확화
- 금융권역별 규제 간 불합리한 불일치성 제거 및 상이한 리스크 기준 자본에 따른 규제 차이 방지
- 복합금융기관의 전체 리스크를 충당할 수 있는 그룹차원의 충분한 가용자금 확보

■ 결론적으로, 보험회사와 은행의 경우 자본조달 구조, 리스크 구성 등이 상이함에 따라 효과적인 리스크 통제를 위해서는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규제 및 감독 체계 수립이 요구됨.

- 은행에 대한 새로운 규제 체계를 보험사에 적용하는 것보다 보험사의 사업모형에 적합한 규제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
-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미시건전성규제를 기초로, 위기 발생 시 다수의 건전한 보험 사업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파급 확산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필요

V 결론

- 은행산업에 대한 규제체계 변화는 보험산업에 즉각적인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 측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BCBS와 FSB가 제안한 은행에 대한 자본 강화,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에 따라, 보험산업에 대해서도 재무건전성 강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임.
 - 추가적인 요구자본 발생 규모에 따라 보험회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보험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 도입 시, 산업별 리스크 특성을 반영한 규제 및 감독체계 수립이 요구됨.
 - 첫째, 보험산업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BaselⅢ에서 제시되고 있는 자본구성의 강화를 수용하여 대비할 필요 존재
 - 둘째,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경우, 현재 보험산업에 대해 자산과 부채에 상응하는 위험자본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는 자본규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가 요구됨.
 - 셋째, 보험산업의 경우 시스템 리스크 초래나 확대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시스템 리스크 유발이 가능한 업무영역의 경우 SIFI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규제차익 방지와 금융위기 시 타 그룹의 영업활동에 기인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복합금융감독 방안을 마련

참고문헌

김해식(2010), 은행업의 BIS3와 보험업 건전성 규제, KIRI Weekly, 보험
연구원

서병호(2010), 바젤Ⅲ 유동성 규제의 국내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주간금
융브리프, 금융연구원

이순호(2010), 은행 유동성 규제에 관한 최근 논의 및 전망, 주간금융브
리프, 금융연구원

이승준(2010), 보험산업 시스템리스크에 관한 국제기구의 논의와 시사점,
주간이슈, 보험연구원

조규환(2010), 최근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논의의 주요 내용, Monthly
Bulletin,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0.10.14), 바젤위원회 금융규제 개편 현황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0.10.21), BCBS 발표 금융규제개혁 보고서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0.11.11), G20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한국은행 보도자료(2010.10.21), BSBS의 자본·유동성 규제개혁 및 향후
작업 - BCBS Report to the G20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보도자료(2010.11.12), G20 서울 정상회의 주요
의제별 성과

Blundell-Wignall, A. and Atkinson, P.(2010), Thinking Beyond BaselⅢ
: Necessary Solutions for Capital and Liquidity, *OECD Journal*
: *Financial Market Trend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2010.1), Review of the
Differentiated Nature and Scope of Financial Regulation,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CEA(2010.6), Insurance : a unique sector. Why insurers differ from banks, CEA

Financial Regulatory Reform Task Force of the American Academy of Actuaries(2010.5), Role of the Systemic Risk Regulator, *American Academy of Actuaries*

Geneva Association(2010.3), Systemic Risk in insurance - An analysis of insurance and financial stability, *The Geneva Association*

IAIS(2009.10), Systemic Risk and the Insurance Sector

IAIS(2010.6), Position Statement on Key Financial Stability Issues

Marry A. Weiss(2010), Systemic Risk and the U. S. Insurance Sector, *Mimeo*

Swiss Re(2010), The essential guide to reinsurance, Sigma

Swiss Re(2003), Reinsurance - a systemic risk?, Sigma

저 자 약 력

김 동 겸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석사

현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

(E-mail : dgkim@kiri.or.kr)

CEO Report 2011-0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발 행 일	2011년 2월
발 행 인	김 대 식
발 행 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인 쇄 소	경성문화사 대표전화 786 - 2999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실
(☎3775-9058)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